

<별지 제20호> <개정 2008. 4. 7, 2009.12.29>

보험업 합병 인가 신청서			
합 병 자	대표자 성명		주민등록번호
	자본금(기금)		
	상 호		
	본점 소재지		
	보험업의 종류		
피 합 병 자	대표자 성명		주민등록번호
	자본금(기금)		허가일자 및 허가번호
	상 호		
	본점 소재지		
	보험업의 종류		
합 병 개 요 (목적, 내용, 방법 등)			
<p>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제4조(보험업법 제139조)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</p> <div style="display: flex; justify-content: space-between; margin-top: 20px;"> <div style="text-align: center;"> <p>신청인 합 병 자(대리인)</p> <p>피 합 병 자(대리인)</p> </div> <div style="text-align: center;"> <p>년 월 일</p> <p>서명 또는 인</p> <p>서명 또는 인</p> </div> </div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 margin-top: 20px;">금융위원회 귀중</p>			

□ 첨부서류

1. 합병후 존속하는 회사 또는 합병으로 설립되는 회사의 정관
2. 합병승인 주주총회 의사록(상호회사인 경우는 사원총회 의사록)
3. 채권자 및 보험계약자 등 이해관계자의 보호절차 이행을 증명하는 서류
4. 상법·자본시장법 기타 관계법령에 따른 절차의 이행에 하자가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
5. 금융위원회가 지정한 시장조사기관 또는 전문연구기관의 경쟁영향분석보고서(다만, 공정거래위원회가 합병의 경쟁영향에 대해 평가한 경우에는 동 평가서로 대체할 수 있다)
6. 예비인가가 있었던 경우 예비인가사항의 이행을 증명하는 서류
7. 기타 금융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

※ 예비인가절차가 생략되는 경우 예비인가시 구비해야할 서류 첨부